



부모의  
권리:

가족을 위한  
얼리스타트  
프로그램  
안내서

개정 2010



## 간행물 안내

*부모의 권리: 가족을 위한 얼리스타트 프로그램 안내서는* 캘리포니아주 교육부와 협력하여 발달장애서비스부 (DDS)의 지도하에 개발되었습니다. WestEd 예방 및 조기개입 센터(WestEd Center for Prevention and Early Intervention)와 계약을 통해 제작되었습니다.

발달장애서비스부의 저작권을 표시하면 본 간행물의 일부 및 모든 부분을 복제할 수 있는 권한이 부여됩니다.

## 주문 정보

추가 사본을 받아보시려면 얼리스타트 리소스(Early Start Resources 800.869.4337번호)로 문의하십시오. 캘리포니아주 얼리스타트 프로그램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DDS(800.515.BABY)로 문의하십시오(웹사이트 : [www.dds.ca.gov/earlystart](http://www.dds.ca.gov/earlystart) 또는 이메일: [earlystart@dds.ca.gov](mailto:earlystart@dds.ca.gov))

# 소개

**얼**리스타트(Early Start) 프로그램은 장애가 있는 신생아부터 36개월까지 영유아 및 그 가족을 위한 주 차원의 조기 개입 서비스입니다. 서비스는 가족 중심적이며 다양한 분야에 걸쳐 여러 기관을 포괄하며 지역 사회를 기반으로 하는 시스템에 따라 제공됩니다. 캘리포니아주 얼리스타트 시스템에는 연방 및 주 법령과 규정이 적용됩니다. 부모\*는 조기 개입 서비스가 자녀의 필요와 가족의 관심사에 적합한 방식으로 제공되도록 보장하는 절차적 보호조치에 대한 권리 및 접근 권한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본 책자는 부모 및 관심이 있는 다른 분들을 대상으로 하며 얼리스타트 프로그램에서 부모의 권리에 대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본 책자에 사용된 부모의 정의는 3페이지를 참조하십시오.

**보** 책자의 여백 부분에 법령 및 규정 인용 출처가 제공되므로 읽으실 때 법령에 명시된 구체적 내용을 참조할 수 있습니다. 얼리스타트 프로그램을 관장하는 연방 법령은 미국법전 제20편 1431조(Title 20, United States Code, Section 1431 et seq.) 장애인교육법(IDEA: Individuals with Disabilities Education Act), 파트 C 입니다.

연방 규정은 연방규정집 제34편 303부(Title 34, Code of Federal Regulations, Part 303)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얼리스타트 프로그램을 관장하는 주법은 정부법 95000 조의 캘리포니아주 조기개입 서비스법(Early Intervention Services Act, Government Code, Section 95000 et seq)입니다. 주 규정은 캘리포니아주 규정집(CCR) 제17 편 52000조부터 52175조(Title 17, California Code of Regulations, Section 52000 through Section 52175)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얼리스타트 프로그램에서 부모로서의 권리와 관련한 질문이 있는 경우 리저널센터 또는 지역교육기관(LEA)에 문의하십시오.

# 기밀 유지 및 기록 이용

**얼** 리스타트 프로그램의 기록은 귀하의 자녀에 대한 중요한 정보 출처입니다. 귀하께서 리저널센터 또는 LEA에 제공한 자녀 및 가족 관련 정보는 기밀로 유지됩니다. 해당 정보는 자녀의 서비스에 관련되었으며 권한이 있는 사람에게만 공유됩니다.

**부모\*로서 귀하는 다음과 같은 권리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 ◆ **CFR 303.402  
CCR 52164  
CCR 52168** 1. 기록을 이용할 권리. 귀하 또는 귀하의 대리인이 귀하의 자녀와 관련된 기록을 조사하고 얻을 수 있는 권리가 이에 포함됩니다.
- ◆ **CCR 52164** 2. 리저널센터 또는 LEA가 기록에서 귀하의 자녀와 관련된 정보를 수정하거나 삭제하도록 요청할 권리.
- ◆ **CCR 52164** 3. 요청 후 5일 이내에 자녀 관련 기록 사본 및/또는 요청한 설명을 받을 권리.
- ◆ **CCR 52168** 4. 기록에 수록된 정보에 대해 리저널센터 책임자 또는 LEA의 관리자와 회의를 요청할 권리
- ◆ **CFR 303.401  
CFR 303.460  
CCR 52160  
CCR 52162  
CCR 52165  
CCR 52169** 5. 가족교육권 및 개인 정보 보호법(Family Education Rights and Privacy Act)에 따라 귀하의 자녀와 관련한 개인 식별 정보를 기밀로 유지하고 해당 정보의 위치, 보관, 공개, 보존 및 파기에 대한 출처, 액세스, 사용 및 정책에 대한 설명을 들을 권리.

◆ **CFR 303.19  
CCR 52000(b)  
(36)**

\* 얼리스타트 프로그램에서 부모는 다음을 의미합니다.

- (A) 자녀의 친부모 또는 양부모
- (B) 후견인
- (C) 부모를 대신하여 행동하는 사람(예: 자녀와 함께 거주하는 조부모 또는 계부모 또는 자녀의 복지에 법적 책임이 있는 사람)
- (D) CFR 303.406 및 CCR 52175에 따라 지명된 대리 부모, 또는
- (E) 하기 조건에 부합하는 위탁 부모
  - 1. 위탁 부모에게 아동의 이해와 상충하는 이해관계가 없을 경우
  - 2. 부모로서 필요한 결정을 내릴 친부모의 권한이 주법에 따라 제한되거나 포기된 경우
  - 3. 위탁 부모가 부모로서 필요한 결정을 내릴 의사가 있는 경우

# 심사 및 평가

- CFR 303.3224  
CFR 303.406  
CCR 52082

◆ **캘리포니아주**의 얼리스타트(Early Start) 프로그램의 자격 여부 결정에는 조기 개입 서비스가 필요할 수 있다는 판단의 여지가 있는 3세 미만의 모든 아동에 대한 시의적절하고 포괄적인 종합 심사 및 평가가 포함됩니다. 참여 가능한 부모 또는 보호자가 없거나 법원의 보호 대상 아동인 경우에는 17편 52175절(Title 17, Section 52175)에 의거하여 리저널센터 또는 LEA에서 이해 상충이 없으며 지식을 갖춘 대리 부모를 지명합니다. 절차적 보호조치는 가족이 법에 따른 권리를 제공받도록 보장합니다.
- CFR 303.403  
GC 95020(c)  
CCR 52160  
CCR 52161

◆ **부모로서 귀하는 다음과 같은 권리를 보유합니다.**
- CFR 303.401  
CFR 303.404  
CCR 52040(d)

◆ **1. 얼리스타트 프로그램에서 귀하의 권리를 전적으로 고지받을 권리.**
- CFR 303.405  
CCR 52162

◆ **2. 자녀의 심사 및 평가를 의뢰하고, 해당 과정 전반에 걸쳐 정보를 제공하고, 결정을 내리고, 자녀의 조기 개입 서비스에 대한 고지에 입각한 동의를 제공할 권리.**
- CFR 303.404  
Note 2  
CCR 52172(b)

◆ **3. 초기 평가 및 평가 시행 전에 자발적 서면 허가 또는 거부를 이해하고 이를 제공할 권리.**  
심사 및 평가에 대한 동의는 서비스를 받기 위한 초기 심사 및 평가 시에만 필요합니다. (동의를 거부할 경우 리저널센터 또는 LEA는 부모의 동의 없이 초기 평가를 받기 위한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 CFR 303.322  
GC 95020  
CCR 520824  
CCR 52084

◆ **4. 자격 여부의 결정을 포함한 초기 심사 및 평가 프로세스에 참여할 권리.**
- CFR 303.321  
CFR 303.322  
CCR 52086

◆ **5. 리저널센터 또는 LEA에 의뢰 요청 후 45일 이내에 완료된 초기 심사 및 평가를 받을 권리.**
- GC 95020(b)

◆ **6. 심사 및 평가 결과를 공유하는 회의에 참여할 권리**
- CFR 303.343 GC  
95014(a)  
GC 95020(b)  
CCR 52082(a)  
CCR 52104

◆ **7. 자격 여부 및 서비스에 관한 모든 의사결정에 참여할 권리.**

**장애인교육법(IDEA)은 다음 사항을 요구합니다.**

- ◆ *CFR 303.323*  
*CCR 52084* 1. 명백히 실행 불가능한 경우를 제외하고 심사 및 평가 자료는 부모가 선택한 언어 또는 기타 의사소통 방식으로 관리됩니다.
- ◆ *CFR 303.323*  
*CCR 52082* 2. 심사 및 평가 절차와 자료는 인종적 또는 문화적 차별 없이 선정 및 관리됩니다.
- ◆ *CFR 303.322*  
*CCR 52082* 3. 심사 및 평가 자료는 발달적 필요가 있는 특정 영역을 평가하는 데 적합하며 설계된 특정 목적에 따라 사용됩니다.
- ◆ *CFR 303.322*  
*CCR 52082*  
*CCR 52084* 4. 심사 및 평가는 자격을 갖춘 직원이 수행합니다.
- ◆ *CFR 303.322*  
*CCR 52082* 5. 시각, 청각, 지체 이상 또는 의사소통 장애가 있는 아동을 대상으로 시행되는 심사 및 평가는 아동의 발달 수준을 정확하게 반영하도록 선정합니다.
- ◆ *CFR 303.322*  
*CCR 52082*  
*CCR 52084*  
*CCR 52102* 6. 심사 및 평가는 신체적 발달(운동 능력, 시각, 청각 및 건강 상태), 의사소통 발달, 인지 발달, 적응 발달 및 사회적 또는 정서적 발달을 포함하는 5가지 발달 영역에서 시행됩니다. 심사 및 평가는 자녀가 얼리스타트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동안 계속 진행됩니다.
- ◆ *CFR 52082(i)*  
*2CR 52084(e)* 7. 심사 및 평가는 가능한 경우 자연스러운 환경에서 수행됩니다.
- ◆ *CFR 303.322*  
*CCR 52082* 8. 자녀의 건강 상태 및 병력과 관련된 해당 기록을 검토합니다.
- ◆ *CFR 303.323*  
*CCR 52082* 9. 어떤 단일한 절차도 귀하 자녀의 조기 개입 서비스 자격 여부를 결정하는 단독 기준으로 사용되지 않습니다.
- ◆ *CFR 303.322*  
*CCR 52084*  
*CCR 52106* 10. 자녀의 발달과 가족의 필요 사항에 관련된 가족 자원, 우선순위 및 우려 사항을 파악하기 위한 인터뷰는 자발적입니다.

# 개별화 가족 서비스 계획안

CFR 303.340  
CFR. 303 342  
GC 95020(b)  
CCR 52100  
CCR 52102

◆ 개별화 가족 서비스 계획안(IFSP: Individualized Family Service Plan)은 자격이 있는 아동과 그 가족에게 조기 개입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서면 계획안입니다. 처음으로 평가를 받은 영유아의 경우, 리저널센터 또는 LEA 의뢰 후 45일 이내에 평가 결과를 공유하고, 자격 여부를 결정하며, 자격을 갖춘 아동의 초기 IFSP 개발을 위한 회의가 주최되어야 합니다. 평가 결과 및 자격 여부 결정은 첫 번째 IFSP 회의 전 가족에게 공유될 수 있습니다.

CFR 303.342<  
CCR 52102

◆ 자녀의 IFSP와 관련한 정기 검토는 적어도 6개월마다 시행되어야 합니다. IFSP 변경 사항이 있거나 귀하께서 리저널센터 또는 LEA에 정기 검토를 요청하는 경우 검토는 더 빈번히 시행될 수 있습니다. 또한 IFSP는 자녀의 상태를 평가하고 IFSP에 변경이 필요한 경우 반영될 수 있도록 매년 검토되어야 합니다.



◆ **IFSP의 개발 및 시행 중 부모로서 귀하는 다음과 같은 권리를  
보유합니다.**

- ◆ CFR 303.343  
CCR 52104 1. IFSP 회의에 참석하고 IFSP 개발에 참여할 권리.
  - ◆ CFR 303.343  
CCR 52104 2. IFSP 회의에 다른 가족 구성원을 초청할 권리.
  - ◆ CFR 303.343  
CCR 52104 3. 권리옹호자 또는 가족 구성원 외의 사람이 IFSP 회의에 참석 및  
참여하도록 초청할 권리.
  - ◆ CFR 303.402  
CCR 52102 4. 완전한 IFSP 사본을 보유할 권리.
  - ◆ CFR 303.342  
CFR 303.403  
CCR 52102 5. IFSP의 내용을 선택한 언어로 완전히 설명받을 권리.
  - ◆ CFR 303.342  
CFR 303.404  
CFR 303.405  
CCR 52102 6. IFSP에 명시된 서비스에 동의할 권리. *귀하께서 서비스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제공되지 않습니다. 처음 서비스를 수락하거나 받은 후  
동의를 철회할 수 있습니다.*
  - ◆ CFR 303.12  
CFR 303.344  
CCR 52106 7. 자연스러운 환경에서 서비스를 제공받거나 그것이 불가능한 경우 그  
사유에 대한 설명을 들을 권리.
  - ◆ CFR 303.460  
CCR 52112  
CCR 52169 8. 자녀에 대한 정보를 다른 기관과 주고받을 권리.
  - ◆ CFR 303.403  
CCR 52161 9. 기관 또는 서비스 제공자가 귀하의 자녀나 가족에게 적합한 조기 개입  
서비스의 식별, 심사, 평가, 배치 또는 제공을 시작하거나 변경할 것을  
제안하거나 거부하기 전에 서면 고지를 받을 권리.
- ◆ 해당 고지에는 다음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 ◆ • 제안 또는 거부된 조치
  - ◆ • 조치의 사유
  - ◆ • 이용 가능한 모든 절차적 보호조치
- ◆ 고지는 명백히 실행 불가능한 경우를 제외하고 귀하가 선택한 언어로  
제공되어야 하며 귀하가 해당 내용을 이해할 수 있도록 번역될 수  
있습니다.

# 중재 회의, 적법 절차

CFR 303.422  
CCR 52173  
CCR 52174

엘리스타트 프로그램에서 부모는 가족 관계를 고려하고 적용 가능한 연방 및 주 법령과 규정을 준수하여 자녀의 필요에 적합한 방식으로 조기 개입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하는 권리를 보유하며 보호를 받습니다. 다음 절차는 3세 미만의 아동에게만 해당됩니다.

**부모로서 귀하는 다음과 같은 권리를 보유합니다.**

CFR 303.419  
CFR 303.420  
CCR 52172

1. 리저널센터 또는 LEA에서 적절한 조기 개입 서비스의 식별, 심사, 평가, 배치 및/또는 제공을 시작하거나 변경하기를 제안 또는 거부할 경우 적법 절차 심리를 요청할 권리.

CFR 303.510  
CCR 52170

2. 민원을 제기하거나 중재 및/또는 적법 절차를 요청할 수 있는 귀하의 권리를 고지받을 권리.

CFR 303.511  
CCR 52170

3. 엘리스타트 프로그램에서 조기 개입 서비스에 적용되는 연방 또는 주 법령이나 규정의 위반이 발생했다고 생각할 경우 민원을 제기할 권리

CCR 52171(e)

4. 민원 제기 또는 적법 절차 심리 요청 전 즉시, 또는 민원/적법 절차 심리 진행 중 언제든지 중재 회의를 요청하여 엘리스타트 프로그램의 조기 개입 서비스에 적용되는 연방 또는 주 법령이나 규정에 따른 모든 문제와 관련된 분쟁을 해결할 권리

CCR 52170(b)

5. 적법 절차의 판결이 이행되지 않을 경우 민원을 제기할 권리.

## 중재 회의

CFR 303.419  
CCR 52173

중재는 중립적 중재자가 귀하와 다른 당사자 간의 합의 협상을 촉진하는 자발적이고 구속력이 없는 기밀 절차입니다. 자발적이며 중재 회의는 조기 개입 서비스 기관과 의견 불일치를 해결하거나 주 및 연방 법령 또는 규정의 위반 혐의를 해결하는 비공식적 방식입니다.

# 심리 및 주정부 민원 제기

- CFR 303.419  
CCR 52173 ◆ **부모로서 귀하는 다음과 같은 권리를 보유합니다.**
- CCR 52173 ◆ **1. 분쟁 해결을 위한 초기 옵션으로 또는 적법 절차 심리나 민원 제기 과정 중 언제든지 중재 요청을 제출할 권리.**
- CCR 52173 ◆ **2. 의견 불일치가 해결되지 않은 경우 적법 절차 심리를 요청하거나 주정부 민원을 제기할 권리.**
- CFR 303.419  
CCR 52173 ◆ **3. 중재 참여를 거부할 권리**
- CFR 303.419  
CCR 52173(c) ◆ **4. 공정한 사람이 중재 회의를 진행하게 할 권리.**
- CFR 303.419  
CCR 52173 ◆ **5. 귀하에게 합리적으로 편리한 시간과 장소에서 중재 회의가 시행되도록 요구할 권리.**
- CFR 303.419(b)  
CCR 52173(j) ◆ **6. 모든 개인 식별 정보가 기밀로 유지되게 할 권리.**
- CFR 303.419  
CCR 52173 (i) ◆ **7. 중재 회의의 결과로 도출된 합의를 설명하는 문서를 받을 권리.**

중재 요청은 다음 주소로 제출됩니다.

- CCR 52173 ◆ Office of Administrative Hearings(행정 심의실)  
수신: Early Start Intervention Section  
2349 Gateway Oaks Drive, Suite 200  
Sacramento, CA 95833  
(916) 263-0654 팩스: (916) 376-6318

## 적법 절차 심리

- CFR 303.420  
CCR 52172 ◆ 모든 부모는 가능한 가장 낮은 행정 단계에서 의견 차이를 해결하도록 권장됩니다. 귀하와 리저널센터 또는 LEA 간의 의견 차이를 해결할 수 없는 경우 적법 절차 심리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부모로서 귀하는 자녀의 서비스 코디네이터, 리저널센터 또는 특수교육 프로그램 운영 지역 (SELPA) 사무소에 도움을 요청하도록 권장됩니다.
- CCR 52172(a) ◆ 적법 절차 심리로 이어지는 상황으로는 식별, 심사, 평가, 배치 또는 서비스에 대한 제안이나 거부와 관련된 의견 불일치가 될 수 있습니다.

# 중재 회의, 적법절차

CCR 52172(g) ◆ 귀하와 리저널센터 또는 LEA가 달리 변경에 동의하지 않는 한 귀하의 자녀는 IFSP에서 현재 받고 있는 조기 개입 서비스를 계속 제공받게 됩니다. 귀하의 의견 불일치가 시작되지 않은 새로운 서비스와 관련된 경우, 귀하의 자녀는 분쟁의 대상이 아니며 IFSP에 명시된 모든 서비스를 받게 됩니다. 연방 법령 및 규정에 따라 귀하의 자녀가 얼리스타트 프로그램에서 전환할 경우에는 주정부가 어떤 상황에서도 조기 개입 서비스 비용을 지불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으므로 자녀의 연령이 36개월이 된 이후 리저널센터가 조기 개입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이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얼리스타트 프로그램에서 전환 이후에 귀하의 자녀가 등록한 프로그램은 귀하와 자녀가 받을 자격이 있는 서비스를 제공할 책임이 있습니다.

적법 절차 심리 요청은 다음 주소로 제출됩니다.\*

CCR 52172 ◆ Office of Administrative Hearings(행정 심의실)  
수신: Early Start Intervention Section  
2349 Gateway Oaks Drive, Suite 200  
Sacramento, CA 95833  
(916) 263-0654 팩스: (916) 376-6318

\*적법 절차 심리 요청 양식은 서비스 코디네이터, 리저널센터, LEA 및 발달장애서비스부(DDS)에서 받으실 수 있습니다.

웹사이트: [www.dds.ca.gov/Forms/pdf/DS1802.pdf](http://www.dds.ca.gov/Forms/pdf/DS1802.pdf)

CCR 52172(e) ◆ 적법 절차 심리는 행정 심의실에서 요청을 접수한 후 30일 이내에 완료되어야 합니다. 문제 해결을 위한 공동의 자발적, 지역적 작업으로 인해 시기적절한 서면 판결의 공표가 연기될 수는 없습니다.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 한 판결은 최종적입니다.

CFR 303.421(a) CCR 52172 ◆ 부모로서 귀하는 다음과 같은 권리를 보유합니다.

1. 귀하의 자녀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의 고용인이 아니며 조기 개입 관련 법령 및 영유아와 가족의 필요 사항에 대한 지식을 갖춘

# 심리 및 주정부 민원제기

- ◆ 공정한 사람이 적법 절차 심리를 수행하도록 할 권리.
- ◆ *CFR 303.423(a)*  
*CCR 52172(f)* ◆ 2. 귀하에게 합리적으로 편리한 시간과 장소에 해당 절차가 시행되도록 요구할 권리.
- ◆ *CCR 52172* ◆ 3. 모든 개인 식별 정보가 기밀로 유지되게 할 권리.
- ◆ *CFR 303.424*  
*CCR 52172* ◆ 4. 결과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해당 절차 완료 후 상대방에 민사 소송을 제기할 권리.
- ◆ *CFR 303.425(a)*  
*CCR 52172(g)* ◆ 5. 분쟁의 대상이 아니며 IFSP에 명시된 서비스를 받을 권리.
- ◆ *CFR 303.460(a)*  
*CCR 52173(j)* ◆ 6. 중재 논의가 기밀로 유지되며 이후 적법 절차 또는 민사 소송 시 증거로 사용되지 않도록 할 권리.
- ◆ 적법 절차 심리 중 귀하는 다음과 같은 권리도 보유하고 있습니다.
- ◆ *CFR 303.422(b)*  
*CCR 52174(d)* ◆ 1. 3세 미만 아동에 대한 조기 개입 서비스와 관련하여 변호인 및/또는 특수한 지식을 갖춘 개인을 동반하여 및 자문을 제공받을 권리.
- ◆ *CFR 303.422(b)*  
*CCR 52174(d)* ◆ 2. 증거를 제시하고, 대면하고, 반대 신문하고, 증인의 출석을 강제할 권리.
- ◆ *CFR 303.422(b)*  
*CCR 52174(d)* ◆ 3. 해당 절차가 시작되기까지 최소 5일 전에 공개되지 않은 증거 제시를 금지할 권리
- ◆ *CFR 303.422(b)*  
*< CCR 52174(d)* ◆ 4. 서면으로나 전자적으로 작성된 절차의 녹취록을 얻을 권리
- ◆ *CFR 303.422(b)*  
*CCR 52174(d)* ◆ 5. 요청이 접수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조사 결과 및 판결에 대한 서면 결과를 얻을 권리
- ◆ **주정부 민원 제기**
- ◆ *CFR 303.510*  
*CCR 52170(a)* ◆ 모든 개인 또는 조직은 DDS, 캘리포니아주 교육부(CDE), 리저널센터, LEA 또는 파트 C 자금 지원을 받는 민간 서비스 제공업체를 대상으로 주 또는 연방의 조기 개입 법령 또는 규정 위반 혐의에 대해 서명된 민원을 서면으로 제기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DDS가 접수된 민원을 조사할 의무가 있더라도

# 중재 회의, 적법 절차

CFR 303.423  
CCR 52170 ◆ 주법에 따라 부모의 서면 동의 없이 얼리스타트 프로그램 수혜자의 개인 식별 정보를 리저널센터 또는 LEA에서 지정하여 권한이 있는 직원 외에 다른 이에게 공개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CFR 303.425  
CCR 52170(e) ◆ 민원 제기에 대한 정보 또는 지원은 자녀의 담당 서비스 코디네이터, 리저널센터 사무소 또는 SELPA에서 제공됩니다. DDS 및 CDE에서 민원 제기와 관련한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 발달장애인 협의회(State Council on Developmental Disabilities) 또는 캘리포니아주 장애인 권리(Disabilities Rights California) 등의 권리옹호 기관에서 추가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CFR 303.425  
CCR 52170(e) ◆ 민원은 다음 주소로 직접 제출됩니다.  
Department of Developmental Services  
Office of Human Rights and Advocacy Services  
수신: Early Start Complaint Unit  
1600 9th Street, Room 240, MS 2-15  
Sacramento, CA 95814  
(916) 654-1888 팩스: (916) 651-8210

## 민원을 제기하는 개인 또는 조직은 다음과 같은 권리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 CCR 52170 ◆ 1. 서비스 코디네이터, 리저널센터 또는 LEA에서 민원 제기와 관련한 지원을 받을 권리.
- CCR 52170 ◆ 2. 교육법 또는 랜터맨 발달장애인법(Lanterman Developmental Disabilities Services Act) 따라 민원을 해결하기 위한 다른 절차를 사용하도록 강요받지 않을 권리.
- CCR 52171(a) ◆ 3. 조사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추가 정보를 DDS에 제출할 권리.
- CCR 52171(c) ◆ 4. DDS에 민원이 접수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최종 서면 판결을 받을 권리.
- CCR 52171(a) ◆ 5. 금전적 보상 또는 기타 시정 조치를 포함할 수 있는 적절한 구제 조치를 받고, DDS의 판결에 적절한 서비스 거부에 대한 구제 조치가 포함된 경우 향후 서비스가 적절히 제공될 것이라는 보장을 받을 권리.

# 심리 및 주정부 민원 제기

- CCR 52171 ◆ 6. 적법 절차 심리에 포함되지 않은 민원 사항은 민원 접수 후 60일 이내에 DDS에서 해결하게 할 권리.
  - CCR 52171 ◆ 7. 동일한 당사자가 연루된 적법 절차 심리 중 이전에 판결을 받은 민원에서 문제가 제기되는 경우 심리 판결은 구속력을 지님을 DDS에서 고지받을 권리.
  - CCR 52171(e) ◆ 8. 공립 교육 기관 또는 민간 서비스 제공업체가 적법 절차 판결을 이행하지 못했다는 민원이 해결되게 할 권리.
- 민원은 다음과 같이 제기되어야 합니다.**
- CCR 52172(a) ◆ 1. 서면으로 작성하여 DDS, CDE, 리저널센터, LEA 또는 얼리스타트 프로그램과 관련된 기타 서비스 제공업체가 연방 또는 주 법령이나 규정을 위반했음을 주장하는 서명된 진술을 포함해야 합니다.
  - CCR 52172(f) ◆ 2. 민원 제기인의 이름, 주소 및 전화번호를 제공합니다.
  - CCR 52172(f) ◆ 3. 위반의 근거가 되는 사실에 대한 설명을 포함합니다.
  - CCR 52172(f) ◆ 4. 제기된 민원에 책임이 있는 당사자의 이름을 포함합니다.
  - CCR 52172(c) ◆ 5. 위반 혐의가 귀하의 자녀 또는 다른 아동을 대상으로 지속되었으므로 더 긴 기간이 합리적인 것이 아닌 한 민원 사항이 발생한 시기는 DDS에 민원이 접수된 날짜로부터 1년 이내여야 합니다.
  - CCR 52172(c) ◆ 6. 민원 제기인이 민원 사항에 대한 구제 조치로 보상 또는 시정 조치를 요청하는 경우 민원 사항이 발생한 시기는 DDS에 민원이 접수된 날로부터 3년 이내여야 합니다.
  - CCR 52172(f) ◆ 7. 해당되는 경우 민원 사항에는 민원 해결을 위해 지역 차원에서 취한 자발적 조치에 대한 설명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 CCR 52172 ◆ 8. 민원 제기인이 60일의 민원 조사 기간 내에 중재 참여를 선택한 경우 해당 민원은 철회됩니다.



캘리포니아주 얼리스타트(California Early Start) 프로그램은 발달장애서비스부가 캘리포니아주 교육부와 협력하여 관리하는 조정된 조기 개입 서비스의 범기관적 시스템입니다.

[www.dds.ca.gov/earlystart](http://www.dds.ca.gov/earlystart)

